

2025년도 제11차 신규직원 자체 채용 경력경쟁시험 공고

2025년 제11차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직원 자체채용 경력경쟁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임용예정 분야, 자격기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 임용예정 분야

분야(직종)	직위	채용인원	업무 및 근무조건
육아나눔터 보조인력	단시간 근로자	5명	○ 육아나눔터 전담인력 업무 보조 ○ 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업무 지원 ○ 육아나눔터 환경 및 비품정리 등 ○ 근무시간: -누리봄, 송내별, 도당별, 옥길: 월~금요일(900-1800) 내 주 14시간 이하 -책마루: 화~토요일(9:00~18:00) 내 주 14시간 이하 ※ 월 60시간 미만 [시간당 12,140원 ※2026년 부천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름]

※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무처: 육아나눔터 5개소 중 1곳

- 누리봄육아나눔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22번길 60, 원미1동행정복지센터)
- 송내별육아나눔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 책마루육아나눔터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121, 책마루도서관 1층)
- 도당별육아나눔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60, 도당어울마당 4층)
- 옥길육아나눔터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151, 부천옥길LH8단지)

○ 자격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직종	직위	인원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육아나눔터 보조인력	단시간 근로자	5명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사업 활동경력자 우대
• (위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취업 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노인학대 38조17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계 법령 의거 취업 취약계층 우대 (적용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대 상	가 산 점 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5·18광주민중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각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가능하며,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첨부·제출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결격사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업제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9조

제19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전·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2. 시험방법

① 전형 및 시험 기준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소지, 직무관련 분야 학위·경력, 직무수행 적합성 등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기준에 따라 검정

연 번	직원 면접시험 기준
1	• 직원으로서의 마음가짐
2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 품행 및 성실성
5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②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험위원 평균 최고 득점자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부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결정하되,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추진 일정	비 고
채용공고	2025. 11. 24.(월) ~ 2025. 12. 9.(화)	○ 공고기간 15일
원서접수	2025. 11. 24(월) ~ 2025. 12. 9(화) 11:00까지	○ 접수기간 10일(시간 엄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2. 11.(목)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25. 12. 16.(화) 예정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25. 12. 19.(금)	○ 센터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등록	2025. 12. 19.(금) ~ 2025. 12. 29.(월) 10:00까지	○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임 용	2026. 1. 2.(금)	○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합격자 공고 및 시험 안내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합니다.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센터 홈페이지: <http://bucheon.familynet.or.kr>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1.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 공통)
2. 지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소개서 1부. (소정양식, 공통)
3.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보훈대상 및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합격자 등록 시 〉

1.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1부.
2. 해당분야 관련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3.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재학·휴학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6.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124011@bwyf.or.kr)

- ※ 2025. 12. 9.(화) 10:00 도착 분에 한함
- ※ 제목에 [육아나눔터 보조인력]성명 기재
예) [육아나눔터 보조인력 분야] 홍길동
- ※ HW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 (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파일명 성명 기재)

4. 기타 유의사항

- 본 채용 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함.
-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추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 결정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① 경력증명서 1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6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
 - ③ 관련 자격증 사본
 - ④ 해당 또는 최종 졸업증명서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1부
 - ⑥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
 - ※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된 서류로 제출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2-326-4212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센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센터 팩스(032-326-4219)또는 이메일(124011@bwyf.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32-326-421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센터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3항, 제4항